

파주시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

□ 개정이유

- 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및 시행령, 시행규칙에 과태료 및 배출부과금 부과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과태료 금액도 시행령 【별표8】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파주시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 과태료 및 배출부과금 부과기준을 개정코자 함.

□ 주요골자

가. 과태료 및 배출부과금 부과기준 삭제. (안제 16조)

과태료 부과기준은 법 제58조, 영 제35조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, 배출부과금 부과기준도 법 제29조, 영 제18조 내지 영 제25조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관련 규정 삭제

나. 배출부과금 등의 부과기준 삭제. (안 별표3)

1. 배출부과금 부과기준 : 법 제29조 및 영 제18조 내지 영 제25조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삭제
2. 과징금의 부과기준 : 법 제37조 제2항 내지 제5항 및 영 제28조 영 제29조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삭제

다. 과태료부과기준 삭제. (안 별표4)

시행령 [별표8]에 과태료 부과금액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삭제

□ 검토의견

가. 법령적합성

- 과태료 부과기준은 법 제58조 및 제35조, 배출부과금 기준은 법 제29조 및 영 제18조 내지 제25조, 과징금 부과기준은 법 제37조 제2항 내지 제5항 및 영 제28조·제29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령적합성에는 문제가 없음.

나. 내용타당성

-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및 시행령, 시행규칙에 과태료 및 배출부과금등 위반행위에 대한 부과기준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, 동 조례에도 중복으로 명시되어 있어 중복된 관련 조례를 삭제하는 것으로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